

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(안) 주요요지

자료제공 : 환경부

1. 법의 적용범위

-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(관리권역)에 대해 적용(안 제3조)
- 대기환경관리에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 적용(안 제5조)

2.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

-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10년마다 「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」을 수립하고,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이를 수정·보완(안 제10조)
- 대기환경개선목표와 기본방향, 대기환경영향 권역별·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삭감목표, 지방자치단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을 규정
-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수준, 환경기술의 발전추세,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의 신·증설 필요성 및 오염원별 배출비중 등을 고려

-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,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「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확정(안 제11조)

3.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

-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13조)

-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: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, 먼지

- 1종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, 2~3종 사업장 및 충남소재 발전소 포함여부·시행시기는 연구용역('03.7~'04.6) 결과를 토대로 TF회의에서 결정하되, 2~3종 사업장 포함시 1종 사업장과는 시차를 두고 시행

-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지역 내에서는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신·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(안 제13조)

- 다만, 산자부장관이 수도권내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 경우에는 예외

○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매 5년마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(안 제14조)

- 할당 당시의 최적방지기술 수준과 향후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가능성, 방지시설 설치 등 기존의 환경개선 노력,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삭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

- 에너지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할당된 배출총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

○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의 의무사항(안 제13조, 14조, 17조)

-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고, 5년마다 허가를 갱신

-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초과배출량의 2배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삭감

-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 부과

○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에 대해 특례부여(안 제15조)

- 배출부과금 부과 및 저황유 사용의무 면제

-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배제하고,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적용

○ 총량규제 대상 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량을 일정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부여(안 제16조)

- 배출권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,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배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사용을 위해 예탁(banking) 가능

- 배출권의 이전은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한 후 효력인정

- 총량규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 허용

4.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

○ 환경부장관이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, 자동차 제작·판매자는 동 고시를 기초로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(안 제18조)

- 자동차 제작·판매자가 보급계획을 미이행한 경우 시정명령

○ 행정기관,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 구매(안 제18조)

-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자가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명령

- 사업자에 대한 구매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

5. 특정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

○ 관리권역내 등록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유자동차(승용1은 제외)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설정(안 제19조)

- 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
- 특정자동차의 소유자 및 관리권역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
- 특정자동차에 배출허용기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소요되는 경우,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·폐차를 권고하고, 소유자가 자동차를 대·폐차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(안 제21조)
- 시·도지사는 저공해 자동차,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,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에 대해 표지부착(안 제24조)
 -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지원
-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및 등급을 공개(안 제27조)

6.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등

- 관리권역내에 공급·판매·사용되는 도료에 대해 친환경도료의 기준을 설정(안 제28조)
 - 친환경도료 판매 또는 사용자는 실적 및 계획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
- 관리권역내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설정(안 제30조)

7. 재원의 확보 및 관리

-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·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(안 제31조)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로 구성된 「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」 설치(안 제33조)
 -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 설치
-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실무위원회 설치(안 제34조) 